【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제도 특별약관 】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및 방법)

① 이 특별약관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실손의료 보험계약(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 별표14 및 별표15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장을 말하며, 이하「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전환용)(이하「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 상태가 아닌 유효한 계약
2. 전환전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전환후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계약

제2조(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및 공제내용 등)

① 전환후계약의 공제내용 및 가입금액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합니다.

②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환후계약과 전환전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전환후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전환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일부터 전환전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전환의 무효)

전환후계약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제3조(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1. 전환후계약의 청약이 철회된 경우
2.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3.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자가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4.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계약의 무효」조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된 경우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후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전환전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및「사기에 의한 계약」조항은 전환후계약에도 효력이 계속됩니다.

4186-11203061-17184290